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71
----------	------

2013년 7월 10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5일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8일
- 라. 상정일자 :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13년 4월 25일 상정, 보류)
제24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2013년 7월 2일 상정, 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의를 보완·변경하고,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를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문 투 표현 등을 알기 쉽고 간결한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로 등 시설물 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2.12.18) 및 「하수도법」 개정('11.11.14)에 따라 공동구, 하수도시설물 등 일부 용어의 정의규정을 보완·변경함(안 제3조)
- 나.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도시안전실에서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함으로써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
-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7조, 제12조, 제13조)
- 라. 공동구 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소속을 도시안전실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지위를 격상시킴으로써 실·본부·국 등 부서간의 원활한 협의를 도모함(안 제18조)
- 마.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하수암거 일제 안전점검 시행계획 수립 및 하수암거 정밀점검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44조)
- 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관리자를 일부 변경하고, 도로부속물 중 차도상 맨홀관리자를 자치구에서 도로사업소로 변경함(안 별표)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제안 개요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원인별로 크게 구분하면, 첫째 상위법 개정 내용의 반영, 둘째 정책변경 내용의 적용, 셋째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의 정비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표 1] 참조)

[표 1] 본 개정안의 각 조별 개정원인 분석

번호	조 별		개정의 주요 원인별				비 고
			상위법 개정	정책 변경	조직 개편	표현	
1	제3조	정의	○			○	국토법(09.2.6 개정) 하수도법(11.11.14 개정)
2	제4조	총괄관리자 지정			○		행정기구조례 시행규칙(12.9.28 개정)
3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특법 시행령(11.11.16 개정)
4	제12조	안전점검의 실시	○	○			시특법 시행령(08.9.18 및 11.11.16 개정)
5	제13조	시설물 상태의 구분	○				시특법 시행령(08.9.18 개정)
6	제18조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	국토법 시행령(10.7.9 개정)
7	제19조	유지관리도면의 작성				○	
8	제20조	안전점검의 실시	○			○	국토법 시행령(10.7.9 개정)
9	제21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10	제22조	공사의 승인				○	
11	제23조	공사의 시행				○	
12	제24조	긴급한 경우의 조치				○	
13	제35조	점용자 지정 등			○		행정기구조례 시행규칙(12.9.28 개정)
14	제36조	안전점검 등		○			

번호	조 별	개정의 주요 원인별				비 고	
		상위법 개정	정책 변경	조직 개편	표현		
15	제37조	시설물의 순찰				○	
16	제41조	안전점검의 실시	○				시특법 시행령(11.11.16 개정)
17	제44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환경부 지침(09.12.29 개정)
18	제45조	안전점검의 실시	○	○			시특법 시행령(11.11.16 개정)
19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	(○)		

■ 개정 추진 경과

- 현행 조례는 1998.4.30일 제정된 이래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을 제외하면 총 6회의 일부 및 전부개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08.7.30일에 일부개정된 바 있음.

[표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개정 연혁

번호	제·개정 종류	공포일자	공포번호	자 치 법 규 명
13	타법개정	2011.07.28	0513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12	일부개정	2008.07.30	04659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11	타법개정	2008.04.03	04616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10	타법개정	2007.12.26	0459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9	일부개정	2007.10.01	04566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8	타법개정	2005.11.10	04329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7	일부개정	2005.09.30	04320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6	일부개정	2003.05.15	04097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5	전부개정	2001.09.29	03909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4	타법개정	2000.07.15	03760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3	일부개정	2000.03.10	03726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2	타법개정	1999.03.15	03565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1	제정	1998.04.30	03497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가) ※ 출처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일부 타법개정 누락)

- 즉 그동안 상위법 개정 등으로 다수의 개정요인이 발생했었음에도 4년 6개월 이상 개정을 미루다 2012.7.10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해 오던 차도상의 맨홀관리를 서울시가 차도와 같이 관리해 줄 것을 건의 받고 이를 수용하면서 뒤늦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세부 검토의견

-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의를 보완·변경하고”라고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2.12.18)에 따라 공동구 등 일부 용어의 정의규정을 보완·변경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2012.12.18일 개정된 국토법의 개정내용은 이번 조례개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며, 실제 이번 개정안 제3조에 반영된 공동구 용어정의는 2009. 2.6일 개정된 국토법에 근거하고, 안 제18조에 반영된 공동구 협의회 관련 내용은 2010.7.9일 개정된 국토법에 근거하고 있음.

- 심지어 2010.10.22일 작성된 도시안전본부장 방침서(물재생계획과-1012)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하수암거 일제 안전점검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0. 12월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번어야 개정안 제45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에 대한 상세한 점검기준을 포함하게

된 것으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그동안 조례 개정에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자세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이번 개정안의 주문내용 중 제3조에 대한 개정사항을 주문하는 문구에서 “같은 조”라 표현해야 할 곳을 “같은 조례”라고 오기한 경우가 두 군데 있으며, 제9조제1항 개정사항에 대한 주문에서도 “제1항제1호를 를 다음과”로 오기하고 있어 중복된 “를”을 삭제해야 하며,

안 제3조제3호 공동구의 정의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이하 “점용시설“이라 한다)”라고 하여 약어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조례 제17조 단서에도 동일한 단서규정 즉,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이 장에서는 “점용시설등”이라 한다)”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현행 제17조 단서에서의 약어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개정안 제13조제2호에서도 안전등급 B등급을 정의하면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없으며,”는 동일한 내용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로 되어 있어 인용과정에서 “지장이”가 빠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보완 수정이 필요함.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초적인 문맥상의 문제도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업무진행을 반증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관행은, 첫째 업무매뉴얼과 같이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실무자에게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고, 둘째 특별히 규정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인용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간단명료해야 할 법규내용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진다는 측면에서 상위법 규정을 조례에 단순 중복 규정하는 것은 피하고 준용규정으로 하면 조례가 한결 간단명료하게 될 것임.

- 또한 이번 개정안 및 현행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매우 부실하여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음.
 - 현행조례 제2조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2호 “공동구”와 제7호 “도로부속물”은 제3조제12호의 “도로부속물”에 대한 용어정의와 별표에 근거할 때 도로부속물에 공동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동구를 따로 분리하여 명시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2호의 “공동구”를 “도로부속물”로 하고, 제7호의 “기타 도로부속물”을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조례 제2조 조례의 적용대상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제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포함하고 “도로시설물”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조례 제3조에서 “도로시설물”을 정의하면서 **차도와 보도** 및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 별표에서는 큰 카테고리인 “도로시설물” 안에 **차도와 보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치구청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차도 및 보도 청소”에서 차도에 “도로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음. 이것은 “도로시설물” 카테고리 안에 차도와 보도를 포함하여 놓고는 또 다시 차도 안에 “도로시설물”을 포함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큰 카테고리인 “도로시설물”을 도로 및 도로시설물로 하고, “도로”에는 **차도와 보도**를 포함하며,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은 “도로시설물”로 구분하고, 자치구청장의 소

관인 “차도(도로시설물 포함) 청소”에서 괄호안의 내용은 삭제하며

또한 현행조례 제3조 “도로시설물”의 정의에서 차도와 보도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 개정안 제4조제2호는 “도로 및 가로의 청소”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후환경본부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로와 가로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 집행 상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 그 밖에 현행조례 제3조제13호의 “교통안전시설”의 정의에서 인용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는 제15호 및 제16호로 변경되었고, 현행조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는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로 수정해야 함.

○ 이번 개정안을 주요 원인별로 구분하면 대표적인 원인의 하나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리임.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표현의 정비 내용 중 “기타”는 “그 밖에”로, “~라 함은”은 “~란”으로, “반기별”은 “6개월에”로 개정되었으나 일부 조항에는 적용하고 일부 조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이번 개정안은 실무적으로 여러 소관부서가 관련된 다소 복잡한 현행조례를 그동안 여러 개정사유가 있었음에도 개정을 미뤄오다 차도 상의 맨홀 관리주체의 변경을 계기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 경우임.
- 지속적으로 보류했던 조례개정에 착수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내용과 여러 부서가 관련되다 보니 효율적인 개정안의 준비가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차제에 실무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71
----------	------------

제안년월일 : 2013년 4월 25일
제안자 : 정희석 의원 외 2명

1. 수정이유

시설물의 관리를 종류 및 부위에 따라 기관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정의된 용어가 매우 혼란스러워 이를 체계적으로 수정하고, 상위법 일부 조항의 단순 반복인용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을 제거하며, 일반명사로 규정된 약어를 알기 쉽게 조정하여 조례해석의 혼란을 예방하는 등 당초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려고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관련법에 정의된 주요시설물의 용어를 바탕으로 각 시설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조정함. (안 제2조, 제4조, 별표 등)
- 나. 일반명사로 규정된 약어를 차별화하여 조례해석의 혼란을 예방함. (안 제17조, 제27조, 제35조 등)
- 다. 상위법의 단순 반복규정을 삭제함. (안 제9조, 제12조 등)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그 밖의 사항들. (안 제 3조 등)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2. 공동구
3.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
4. 하천복개구조물
5.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6. 하수도
7. 그 밖의 도로부속물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2. "도로(차도·보도)"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

3.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4.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이하 "점용시설"이라 한다)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표지"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
6. "도로표지시스템"이란 도로표지의 위치·내용 및 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7. "무인단속시스템"이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 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9. "도로전광표지"란 시설물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하천복개구조물"이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육천' 포함)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
11.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호안·보·수제·수문·관측시설·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1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4.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15. "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6. "2종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7. "1종·2종이외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도시안전실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1. 도시안전실장 :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그 밖의 도로부속물
2. 도시교통본부장 :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버스전용차로·자전거도로 및 그 밖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3. 기후환경본부장: 도로(차도·보도)의 청소
4. 푸른도시국장: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제외)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1종·2종이외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르며,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의 계획수립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① 관리자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따라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1의 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10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로 한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도로상의 공사 시행) ①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1의2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종·2종이외시설물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제13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영 별표3의2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영 별표3의2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시설물별로 영 별 표3의2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해당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바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광원의 교체·배선·기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은 공동구의 각 점용시설별 점용자(이하 "점용자"라 한

다)가 책임·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시행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공동구 본체의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관련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2.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③ 협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④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동구관리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유지관리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직원 포함)
2. 관할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3. 공동구 점용기관의 소속직원

- ⑤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동구별 개선사업 시행계획(공사시기, 공사내용, 공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
 - 2. 그 밖에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등
- ⑥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 관리자는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그 밖의 관리도면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공동구도면”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② 공동구도면은 공동구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교점부 상세도면, 그 밖의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③ 공동구도면은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관리자는 제2항의 공동구도면 외에 공동구의 주요 지점에 대해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관리자는 공동구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소방재난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공동구도면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과 점용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누전·화재·누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한 결과 이상을 발견하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을 점검하려면 미리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관 점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점용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관리자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점용시설공사의 사전 승인) ①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이하 "점용시설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시설공사가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이나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미리 점용시설공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공사가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점용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점용시설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점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점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가 점용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화재 또는 누수 등에 의하여 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바로 관리자에게 긴급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점용시설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점용시설의 점용자가 책임을 진다.

안 제4장의 제목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을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로 한다.

안 제26조의2, 안 제27조부터 안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교통안전시설의 관리) ①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매년 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자가 수립한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표지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표지의 세척·도색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로표지 장애시설 정비(신호등·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표지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관리자는 도로표지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반 구성 : 점검반은 도로표지 관리부서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

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관리
2. 통신선로 관리
3. 그 밖에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관리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업무)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관리센터(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남산권 교통관리센터),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의 수집·가공·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전기·통신망 등 관련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제1항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도로순찰업무, 긴급구조업무, 교통방송·홍보업무, 공사장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괄관리자에게 통보·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등)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

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바로 보수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설치한 도로에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점용허가권자(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전에 해당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35조부터 안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설치사용자 지정 등) ① 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 등 시설물(이하 "설치시설물"이라 한다)은 해당 설치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설치사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각 설치시설물의 설치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단, 도로기능과 관계없이 별도로 견인소·주차장·철도·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2.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이면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자치구청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3.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

의 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③ 시장은 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설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시설물별로 설치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점검 등) ① 설치사용자는 하천복개구조물을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중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치사용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복개구조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도로 기능의 하천복개구조물 설치사용자는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 설치사용자는 소관 설치시설물에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하천복개구조물과 설치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치사용자는 순찰을 실시한 결과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유지보수공사 실시·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사용자에게 해당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38조(하천복개공사 시행) 관리자가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서류의 준비) ① 설치사용자는 순찰·안전점검·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순찰일지, 안전점검일지
2. 작업일지
3. 설치시설물관리카드
4. 그 밖의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설치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설치시설물관리카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안 제6장의 제목 “하천 및 하천시설물”을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 시설)”로 한다.

안 제40조를 삭제한다.

안 제41조부터 안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영 별표1의2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보수조치)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성의 확보 및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41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보수 및 보강 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따라야 한다.

제43조(서류의 준비)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점검일지
2. 작업일지
3.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
4. 특별법에 의한 점검·진단 자료
5. 그 밖의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안 제7장의 제목 “하수도시설물”을 “하수도”로 한다.

안 제44조부터 안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2. 정기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은 6개

월에 1회 이상, 하수관거 등 그 밖의 시설은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 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정밀 점검 실시시기는 영 별표1의2를 적용하고,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4. 특별점검 : 강우 전·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하천복개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를 위한 하수가스의 채취장소는 관리자와 시험소장이 협의 하여 정한다.

④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도로부속물은 별표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

안 제47조 및 안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포함) ○ 차도 및 보도의 청소	자치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관리(청소 포함) ○ 녹지 및 가로수	도시안전실장
		○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도 로 부 속 물	공동구	○공동구	도시안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 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 설물	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의 가로등 ○서울특별시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충격흡수시설 · 낙석방지망 · 절개지 · 도로옹벽 · 방음벽 및 맨홀 등)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 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도로시설물에 대 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 머지 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부속물포함)	자치구청장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 통 관 리 시 설	지능형 교통체계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 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전용 차로단속시스템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본부장
	도로표지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 사업소장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 통 안 전 시 설	신호기 · 안전표지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 통 안 전 관 련 도 로 부 속 물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차량진입금지시 설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시안전 실장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 속물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중앙 및 환승 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하천시설	한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문,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한강사업본부장
	국가 및 지방하천(한강제외) · 국가 및 지방하천이외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 수문의 구조물, 문짝, 권양기 등 관련 시설 ○ 갑문의 구조물, 문짝, 권양기, 통로청소, 수문개폐 등 ○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도시안전실장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도시안전실장

다. 하천과 공원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구간(도로부속물·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의 민원·분쟁·소송 관련 업무수행 : 도로사업소장

참고1) “차도”란 보·차도의 경계 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생략)</p> <p>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2. 공동구 3. 교통안전·관리시설물 4. 하천복개구조물 5. 하천 및 하천시설물 6. 하수도시설물 7. 기타 도로부속물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시설물"이란 일반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현행과 같음)</p> <p>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2. 공동구 3. 교통안전·관리시설물 4. 하천복개구조물 5. 하천 및 하천시설물 6. 하수도시설물 7. 기타 도로부속물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시설물"이란 일반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2. 공동구 3.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 4. 하천복개구조물 5.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6. 하수도 7. 그 밖의 도로부속물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2. "도로(차도·보도)"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3.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설비,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표지"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기타표지**를 말한다.
5. "도로표지시스템"이라 함은 도로표지의 위치·내용 및 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6. "무인단속시스템"이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처리하는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3.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이하 "점용시설"이라 한다)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표지"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기타표지**를 말한다.
5. "도로표지시스템"이라 함은 도로표지의 위치·내용 및 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6. "무인단속시스템"이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처리하는

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

3.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4.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이하 "점용시설"이라 한다)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표지"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
6. "도로표지시스템"이란 도로표지의 위치·내용 및 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7. "무인단속시스템"이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지능형교통체계"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8. "도로전광표지"라 함은 도로상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9. "하천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육천 포함)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
10. "하천시설물"이라 함은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제방·호안·보·수제·수문·관측시설·육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포함) 등의 시설물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11. "하수도시설물"이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시설을 말한다.

7. "지능형교통체계"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8. "도로전광표지"라 함은 도로상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9. "하천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육천 포함)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
10. "하천시설물"이라 함은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제방·호안·보·수제·수문·관측시설·육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포함) 등의 시설물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11. "하수도시설물"이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시설을 말한다.

8.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9. "도로전광표지"란 시설물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하천복개구조물"이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육천 포함)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
11.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율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호안·보·수제·수문·관측시설·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12.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3. "교통안전시설"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 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14. "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시설물을 말한다.

15. "2종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6. "1종·2종이외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도시안전실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 1.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하천 및 하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

12.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3. "교통안전시설"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14. "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5. "2종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6. "1종·2종이외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안전실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요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 1. 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상의 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전용차로단속시스템, 도로표지,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부속물(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판,

13."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4.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15. "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시설물을 말한다.

16. "2종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7. "1종·2종이외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도시안전실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 1. 도시안전실장 :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그 밖의 도로부속물

2. 도시교통본부장 :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도로반사경,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내 부속시설,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부속물, 자전거도로, 기타 교통안전 부속물

2. 기후환경본부장: 도로 및 가로의 청소

3.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기타 도로부속물

4. 푸른도시국장: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

2. 도시교통본부장 :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버스전용차로·자전거도로 및 그 밖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3. 기후환경본부장: 도로(차도·보도)의 청소

4. 푸른도시국장: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제외)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구조 또는 용도 등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당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1종·2종이외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구조 또는 용도 등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당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의 계획수립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의 계획수립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르며**,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의 계획수립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① 관리자는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5년에 1회 이상 실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시

② 제1항의 정밀안전진단 기관 및 대가 등에 관하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안전등급에 따라 각각 A등급은 6년, B·C등급은 5년,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시

② 제1항의 정밀안전진단 기관 및 대가 등에 관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따라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①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1의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여는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장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제11조(도로공사의 시행) ①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

하여는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장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제11조(도로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10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장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제11조(도로상의 공사 시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에

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육안,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
- 3.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
 - 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
 - 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
 -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 설>

제13조(시설물 상태의 구분)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2. 정밀점검 : 안전등급에 따라 각각 A등급은 3년, B·C등급은 2년, D·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 3. 긴급점검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정의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종 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제13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하여 영 별표1의2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종·2종이외시설물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제13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영 별표3의2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1. <u>A급</u> : <u>안전 및 기능유지가 정상적인 최상의 상태</u></p> <p>2. <u>B급</u> : <u>경미한 손상은 있으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u></p> <p>3. <u>C급</u> : <u>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u></p> <p>4. <u>D급</u> : <u>주요부재가 노후화(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되어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u></p> <p>5. <u>E급</u> : <u>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의 사용을 즉시 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u></p>	<p>1. <u>A등급</u> : <u>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u></p> <p>2. <u>B등급</u> : <u>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u></p> <p>3. <u>C등급</u> : <u>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u></p> <p>4. <u>D등급</u> : <u>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u></p> <p>5. <u>E등급</u> : <u>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p>	<p>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p>	<p>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영 별표3 의2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p>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 및 도로시설물별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 및 터널 등의 조명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광원의 교환·배선·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 및 도로시설물별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 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 및 터널 등의 조명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광원의 교환·배선·기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시설물별로 영별표3의2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해당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바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광원의 교

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의 정비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관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구

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 시설(이하 이 장에서는 "점용시설등"이라 한다)은 각 공동구 점용시설물별 점용자(이하 이 장에서는 "점용자"라 한다)가 책임·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등의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시행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공동구 본체의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의 정비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관한 자료와 유지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구

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 시설(이하 이 장에서는 "점용시설등"이라 한다)은 각 공동구 점용시설물별 점용자(이하 이 장에서는 "점용자"라 한다)가 책임·관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등의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체·배선·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구

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은 공동구의 각 점용시설별 점용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책임·관리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에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관련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2.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 공동구 점용기관의 소속 임·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 설〉

③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④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동구관리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③ 협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삭 제〉

④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동구관리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 (생략)

⑤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별 개선사업 시행계획(공사시기, 공사내용, 공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
2. 기타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등

⑥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 관리자는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기타 관련도면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고,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도면은 공동구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및 교점부 상세도면, 기타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3. (현행과 같음)

⑤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현행과 같음)
2. **기타**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등

⑥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 관리자는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기타 관리도면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도면은 공동구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및 교점부 상세도면, **기타**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3. (개정안과 같음)

⑤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그 밖에**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등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 관리자는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그 밖의 관리도면**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공동구도면**"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도면은** 공동구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교점부 상세도면, **그 밖의**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도면에는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의 도면외에 공동구의 주요지점에 대하여는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총괄관리자·소방재난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도면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본체·부대시설 및 점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내·외부시설로 구분하여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2.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3.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육안,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점용자 또는 전문용역회사에 용역 시행)
4.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
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③ 도면에는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의 도면 외에 공동구의 주요지점에 대하여는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소방재난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도면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본체·부대시설 및 점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정기점검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정밀점검 :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
4. 긴급점검 : 공동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
<삭 제>

③ 공동구도면은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의 공동구도면 외에 공동구의 주요 지점에 대해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공동구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소방재난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공동구도면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과 점용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때

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

한 때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

는 때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삭 제>

<삭 제>

<삭 제>

②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하는 때에는 누전·화재·누수 및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누전·화재·누수 및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 시정조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소관 점용시설등에 대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점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소관 점용시설등에 대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점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관리자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누전·화재·누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한 결과 이상을 발견하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을 점검하려면 미리**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관 점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점용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관리자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의 승인) ① 점용자는 점용시설등의 공사 또는 보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인하여 공동구의 본체·부대시설 또는 다른 점용시설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공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점용시설의 점용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시설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화재

제22조(공사의 승인) ① 점용자는 점용시설등의 공사 또는 보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공동구의 본체·부대시설 또는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공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점용시설의 점용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시설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화

제22조(점용시설공사의 사전 승인) ①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점용시설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시설공사가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이나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미리 점용시설공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공사가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점용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점용시설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점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점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가 점용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화

또는 누수 등에 의하여 점용시설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긴급조치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또는 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점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4장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제26조의2(교통안전시설의 관리) ①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의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 또는 누수 등에 의하여 점용시설 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바로 관리자에게 긴급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또는 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점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4장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제26조의2(교통안전시설의 관리) ①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의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 또는 누수 등에 의하여 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개정안과 같음)

제25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점용시설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점용시설의 점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4장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

제26조의2(교통안전시설의 관리) ①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매년 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표지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표지의 세척·도색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로표지 장애시설 정비(신호등·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매년 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4.(현행과 같음)
5. 기타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매년 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자가 수립한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4. (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표지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관리자는 도로표지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반 구성 : 점검반은 도로표지 관리부서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

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관리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현행과 같음)

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

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

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개정안과 같음)

1.~ 2.(개정안과 같음)

- 2. 통신선로 관리
- 3. 기타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 관리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업무)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통관리센터(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남산권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가공 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2. 전기·통신망 등 관련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 3. 기타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제1항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도로순찰업무, 긴급구조업무, 교통방송·홍보업무, 공사장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괄관리자에게 통보·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등)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수 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관리자는 지능

- 3. 기타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관리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업무)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통관리센터(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남산권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가공 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2. (현행과 같음)
- 3. 기타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등)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수 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관리자는 지능

- 3. 그 밖에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관리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업무)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통관리센터(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남산권 교통관리센터),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의 수집·가공·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2. (개정안과 같음)
- 3.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② (개정안과 같음)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등)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바로 보수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관리자는 지능

형교통체계 설치도로에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점용 허가권자(신고에 대한 수리권자를 포함한다)는 허가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하천복개구조물

제35조(점용자 지정 등) ① 하천복개구조물(이하 "복개구조물"이라 한다)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장에서 "점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각 시설물의 점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주차장, 적화장 포함)인 경우에는 도시안전실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이 점용자가 된다.(단, 도로기능과 관계없이 별도로 견인소·주차장·철도·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점용자가 된다).

형교통체계 설치도로에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점용 허가권자(신고에 대한 수리권자를 포함한다)는 허가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하천복개구조물

제35조(점용자 지정 등) ① 하천복개구조물(이하 "복개구조물"이라 한다)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장에서 "점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각 시설물의 점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이 점용자가 된다.(단, 도로기능과 관계없이 별도로 견인소·주차장·철도·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점용자가 된다).

형교통체계를 설치한 도로에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점용 허가권자(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하천복개구조물

제35조(설치사용자 지정 등) ① 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 등 시설물(이하 "설치시설물"이라 한다)은 해당 설치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설치사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각 설치시설물의 설치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단, 도로기능과 관계없이 별도로 견인소·주차장·철도·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2.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공 건축물은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은 자치구청장이 점용자가 된다.

3.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점용자가 된다.

③ 시장은 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점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점검 등) ① 점용자는 복개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복개구조물의 본체를 2중 시설물에 준하여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복개구조물 본체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 점용자는 소관시설물에

2.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은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은 자치구청장이 점용자가 된다.

3. 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점용자가 된다.

③ 시장은 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점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점검 등) ① 점용자는 복개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복개구조물의 본체를 2중시설물에 준하여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복개구조물 본체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도로 기능의 복개구조물 점용자는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 점용자는 소관시설물에

2.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이면 공공 건축물의 경우는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자치구청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3.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③ 시장은 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설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시설물별로 설치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점검 등) ① 설치사용자는 하천복개구조물을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중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치사용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복개구조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도로 기능의 하천복개구조물 설치사용자는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 설치사용자는 소관 설치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복개구조물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순찰을 실시한 결과 복개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물의 사용제한·유지보수공사 실시·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점용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점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하천복개공사 시행) 관리자가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이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서류비치) ① 점용자는 순찰·안전점검·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순찰일지, 안전점검일지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복개구조물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순찰을 실시한 결과 복개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시설물의 사용제한·유지보수공사 실시·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점용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점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하천복개공사 시행) 관리자가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이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서류비치) ① 점용자는 순찰·안전점검·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시설물에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하천 복개구조물과 설치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치사용자는 순찰을 실시한 결과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유지보수공사 실시·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사용자에게 해당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38조(하천복개공사 시행) 관리자가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서류의 준비) ① 설치사용자는 순찰·안전점검·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2. (개정안과 같음)

2. 작업일지
3. 시설물관리카드
4. 기타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점용자는 제1항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하천 및 하천시설물

제40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 및 하천시설물(이하 이 장에서 "하천시설물" 이라 한다)의 점검·정비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1종시설물·2종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은 특별법·령에 의한 점검·진단에 관한 사항

제4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육안, 점검기계 및

3. 시설물관리카드
4. 기타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점용자는 제1항 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하천 및 하천시설물

제40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 및 하천시설물(이하 이 장에서 "하천시설물" 이라 한다)의 점검·정비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1종시설물·2종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은 특별법·령에 의한 점검·진단에 관한 사항

제4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 반기에 1회 이상
2. ----- :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B·C

3. 설치시설물관리카드
4. 그 밖의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설치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설치시설물관리카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삭 제〉

제41조(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영 별표1의2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기구 등에 의한 점검)

3.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
- 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
 - 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
 -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관리자는 수문, 육갑문,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일상점검 : 일일 또는 필요시 수시
- 2. 정기점검 : 관리자가 정하는 점검표에 의한 주간·월간·분기 및 연간점검
- 3. 긴급점검 : 시설물의 긴급상황 발생시

제42조(보수조치)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성의 확보 및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3. (현행과 같음)

가.~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2조(보수조치)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성의 확보 및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삭 제〉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42조(보수조치)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성의 확보 및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41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보수 및 보강 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서류비치)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일지
2. 작업일지
3.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
4. 특별법에 의한 점검·진단 자료
5. 기타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관리자는 제43조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하수도시설물

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하수관거유지관리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보수 및 보강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서류비치)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일지
2. 작업일지
3.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
4. 특별법에 의한 점검·진단 자료
5. 기타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관리자는 제43조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하수도시설물

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

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보수 및 보강 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따라야 한다.

제43조(서류의 준비)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 4.(개정안과 같음)
5. 그 밖의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하수도

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수도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2. 정기점검 :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3.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4. 특별점검 : 강우 전·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복개구조물 및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수도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정기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은 반기에 1회 이상, 하수관거 등 기타시설은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정밀점검 실시시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적용하고,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4.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복개구조물 및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정기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은 6개월에 1회 이상, 하수관거 등 그 밖의 시설은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정밀점검 실시시기는 영 별표1의2를 적용하고,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4. (개정안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하천복개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를 위한 하수가스의 채취장소는 관리자와 시험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조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기타 도로부속물 관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도로부속물은 별표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이를 책임 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조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기타 도로부속물 관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도로부속물은 별표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이를 책임 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도로부속물은 별표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 로 시 설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시설물 	도시안전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관리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2종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관리(측구포함) ◦차도(도로시설물 포함) 및 보도 청소 	자치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관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 및 녹지·가로수 ◦차도관리 			
도로교통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2종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 	도로교통사업소장	
	공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 및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신설) 	자치구청장
도로부속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2종 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 	도로교통사업소장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 로 시 설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관리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및 부속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관리(측구포함) ◦차도(도로시설물 포함) 및 보도 청소 	자치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관리 및 차도관리 <삭제> ◦청소 및 녹지·가로수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도로부속물	공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구 	도시안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 및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시설물의 조명등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시설물의 조명등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차도 및 보도 청소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녹지 및 가로수 	도시안전실장	
자동차전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도로부속물	공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구 	도시안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자치구청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가로등(보도육교 포함)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조명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도 로 부 속 물	기타도로부속물 (방호 울타리·중앙분리대·차량진입금지시설·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법면·도로옹벽·방음벽·맨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보·차도부분)상과 관련된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과 관련된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 차도상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옹벽·중앙분리대 포함) ○서울특별시도상 및 자동차전용도로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2종시설물및 1종·2종의시설물과 관련된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 차도이외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상 맨홀 관리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사업소장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정보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설비와 긴급 연락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시교통본부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가로등(보도육교 포함)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조명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도 로 부 속 물	기타도로부속물 (방호 울타리·중앙분리대·차량진입금지시설·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법면·도로옹벽·방음벽·맨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보·차도부분)상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자동차전용도로상의 맨홀관리(시설물 구간제외)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 차도상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옹벽·중앙분리대 포함) ○서울특별시도상 및 자동차전용도로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시설물과 관련된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 차도이외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구간 및 특별시도의 차도상 맨홀 관리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도로사업소장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정보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설비와 긴급 연락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시교통본부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나 머 지 도 로 부 속 물 (방호 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도로옹벽·방음벽·맨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전용도로(보도 및 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점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본부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안전·관리 시설물	버스 전용차로 단속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전용차로 유·무인 단속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도시교통본부장
	도로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삭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중 2종 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안전 시설 (신호기, 안전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 자동차전용도로·서울특별시도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신호기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도로교통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관할 도로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안전 부속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안전·관리 시설물	중앙버스 전용차로 단속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버스전용차로 유·무인 단속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도시교통본부장
	도로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삭제>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시설물구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시설물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안전 시설 (신호기, 안전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시설물구간 제외)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구간과 서울특별시도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관할 도로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안전 부속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관리 시설	버스 전용차로 단속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본부장
	도로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교통안전 시설	신호기·안전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자치구청장	
교통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시선 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등)	○자동차전용도로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신설>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부속물(중앙 및 환승 정류소 보도관리 포함)의 설치 및 관리(1종 시설물 구간 제외)	도로교통 사업소장	
하천 시설물	하천	○국가, 지방1·2급 하천 (단,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이 유지관리)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자치구청장
	빗물펌프장 (유수지 포함)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호안블럭,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등	자치구청장
	수문	○구조물, 문짝, 권양기 시설물 등	자치구청장
	육갑문	○한강의 육갑문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한강사업 본부장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기타하천 육갑문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자치구청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시선 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등)	○자동차전용도로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시설물 구간 제외)	도시 안전실장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구간과 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시설물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도로 사업소장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부속물(중앙 및 환승 정류소 보도관리 포함)의 설치 및 관리<삭제>	도로 사업소장	
하천 시설물	하천	○국가, 지방하천 (단,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이 유지관리)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자치구청장
	빗물 펌프장 (유수지 포함)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호안블럭,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등	자치구청장
	수문	○구조물, 문짝, 권양기 시설물 등	자치구청장
	육갑문	○한강의 육갑문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한강사업 본부장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기타 하천 육갑문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자치구청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의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서울특별시의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중앙 및 환승 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 사업소장
하천 시설	한강	○감문,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그 밖의 하천시설	한강사업 본부장
	국가 및 지방 하천 (한강 제외)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빗물펌프장(유수지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호안블럭,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수문의 구조물, 문짝, 권양기 등 관련 시설 ○감문의 구조물, 문짝, 권양기, 통로청소, 수문개폐 등 ○감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하수도 시설물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 소장 (위탁업체 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 소장 (위탁업체 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 1종 시설물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유지관리 - 2종이하 시설물은 도로교통사업소장이 유지관리(단, 1종 시설물 포장 관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능별 전용기관 (부서)의장
<p>- 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관리국장</p> <p>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와 가로수 녹지대 : 도시교통본부</p> <p>참고 : 차도가 있는 도로에서의 차도는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면을 말함</p>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하수도 시설물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 소장 (위탁업체 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 소장 (위탁업체 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사업소장 주기능별 전용기관 (부서)의장
<p>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도시안전실장</p> <p>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부분을 말한다)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도시안전실장</p> <p>참고 : 차도가 있는 도로에서의 차도는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면을 말함</p>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 소장 (위탁업체 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 소장 (위탁업체 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사업소장 주 기능별 설치 사용자
<p>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도시안전실장</p> <p>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도시안전실장</p> <p>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p> <p>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구간 중(도로부속물·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의 민원·분쟁·소송관련 업무수행 : 도로사업소장</p> <p>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p> <p>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p>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2. 공동구
3.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
4. 하천복개구조물
5.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6. 하수도
7. 그 밖의 도로부속물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시설물"이란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2. "도로(차도·보도)"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

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

3.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4.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이하 "점용시설"이라 한다)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표지"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
6. "도로표지시스템"이란 도로표지의 위치·내용 및 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7. "무인단속시스템"이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도로 상에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9. "도로전광표지"란 시설물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하천복개구조물"이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육천' 포함)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
11.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

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호안·보·수제·수문·관측시설·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1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4.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15. "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6. "2종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7. "1종·2종이외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도시안전실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1. 도시안전실장 :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그 밖의 도로부속물
 2. 도시교통본부장 :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버스전용차로·자전거도로 및 그 밖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3. 기후환경본부장: 도로(차도·보도)의 청소
 4. 푸른도시국장: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제외)
-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

-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 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1종·2종이외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르며,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 별로 관리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① 관리자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따라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 표1의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10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 시설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도로상의 공사 시행) ①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영 별표1의2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종·2종이외시설물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

제13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영 별표3의2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영 별표3의2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시설물별로 영 별표3의2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해당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바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광원의 교체·배선·기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은 공동구의 각 점용시설별 점용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책임·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관

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시행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공동구 본체의 내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관련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2.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③ 협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④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동구관리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유지관리기관의 공무원(수탁기관 소속직원 포함)
2. 관할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3. 공동구 점용기관의 소속직원

⑤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별 개선사업 시행계획(공사시기, 공사내용, 공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
2. 그 밖에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등

⑥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 관리자는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그 밖의 관리도면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공동구도면”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도면은 공동구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교점부 상세도면, 그 밖의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공동구도면은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의 공동구도면 외에 공동구의 주요 지점에 대해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공동구도면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소방재난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공동구도면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과 점용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누전·화재·누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한 결과 이상을 발견하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을 점검하려면 미리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관 점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점용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관리자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점용시설공사의 사전 승인) ①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점용시설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시설공사가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이나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미리 점용시설공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공사가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점용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점용시설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점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점용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점용자가 점용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화재 또는 누수 등에 의하여 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바로 관리자에

게 긴급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점용시설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점용시설의 점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4장의 제목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을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로 한다.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교통안전시설의 관리) ①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거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매년 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자가 수립한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표지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표지의 세척·도색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로표지 장애시설 정비(신호등·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도로표지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관리자는 도로표지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반 구성 : 점검반은 도로표지 관리부서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

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관리
2. 통신선로 관리
3. 그 밖에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관리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업무)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관리센터(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남산권 교통관리센터),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의 수집·가공·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전기·통신망 등 관련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제1항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도로순찰업무, 긴급구조업무, 교통방송·홍보업무, 공사장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괄관리자에게 통보·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등)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바로 보수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설치한 도로에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점용허가권자(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 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설치사용자 지정 등) ① 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 등 시설물(이하 "설치시설물"이라 한다)은 해당 설치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설치사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각 설치시설물의 설치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단, 도로기능과 관계없이 별도로 전인소·주차장·철도·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2.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이면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자치구청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3. 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

③ 시장은 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설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시설물별로 설치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점검 등) ① 설치사용자는 하천복개구조물을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설치사용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복개구조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도로 기능의 하천복개구조물 설치사용자는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 설치사용자는 소관 설치시설물에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하천복개구조물과 설치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치사용자는 순찰을 실시한 결과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유지보수공사실시·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사용자에게 해당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38조(하천복개공사 시행) 관리자가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서류의 준비) ① 설치사용자는 순찰·안전점검·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순찰일지, 안전점검일지
2. 작업일지
3. 설치시설물관리카드
4. 그 밖의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설치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설치시설물관리카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의 제목 “하천 및 하천시설물”을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영 별표1의 2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보수조치)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성의 확보 및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41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보수 및 보강 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따라야 한다.

제43조(서류의 준비)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점검일지
2. 작업일지
3.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
4. 특별법에 의한 점검·진단 자료
5. 그 밖의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의 제목 “하수도시설물”을 “하수도”로 한다.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

정부의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2. 정기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은 6개월에 1회 이상, 하수관거 등 그 밖의 시설은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정밀점검 실시시기는 영 별표1의2를 적용하고,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4. 특별점검 : 강우 전·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하천복개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사를 위한 하수가스의 채취장소는 관리자와 시험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④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도로부속물은 별표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포함) ○ 차도 및 보도의 청소	자치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관리(청소 포함) ○ 녹지 및 가로수	도시안전실장
		○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도 로 부 속 물	공동구	○공동구	도시안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 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 설물	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충격흡수시설 · 낙석방지망 · 절개지 · 도로옹벽 · 방음벽 및 맨홀 등)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 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도로시설물에 대 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 머지 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부속물포함)	자치구청장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 통 관 리 시 설	지능형 교통체계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 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전용 차로단속시스템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본부장
	도로표지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 사업소장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 통 안 전 시 설	신호기 · 안전표지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 통 안 전 관 련 도 로 부 속 물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차량진입금지시 설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시안전 실장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 속물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중앙 및 환승 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하천시설	한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문,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한강사업본부장
	국가 및 지방하천(한강제외) · 국가 및 지방하천이외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 수문의 구조물, 문짝, 권양기 등 관련 시설 ○ 갑문의 구조물, 문짝, 권양기, 통로청소, 수문개폐 등 ○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도시안전실장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도시안전실장
- 다. 하천과 공원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 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구간(도로부속물·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의 민원·분쟁·소송 관련 업무수행 : 도로사업소장

참고1) “차도”란 보·차도의 경계 측구를 제외한 포장 측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u>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u>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u>사항을 제외하고는</u> 이 조례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u> 및 도로시설물 2. 공동구 3. <u>교통안전·관리시설물</u> 4. 하천복개구조물 5. <u>하천 및 하천시설물</u> 6. <u>하수도시설물</u> 7. <u>기타</u> 도로부속물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시설물"이란 <u>일반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u>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u>주요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u>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u>사항 외에는</u> 이 조례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차도·보도)</u> 및 도로시설물 2. 공동구 3. <u>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u> 4. 하천복개구조물 5. <u>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u> 6. <u>하수도</u> 7. <u>그 밖의</u> 도로부속물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은</u>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시설물"이란 <u>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u>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2. "<u>도로(차도·보도)</u>"란 <u>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u>

현행	개정안
<p>2. <u>"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u>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p> <p>3. <u>"공동구"라 함은</u>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설비,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4. <u>"도로표지"라 함은</u>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기타표지를 말한다.</p> <p>5. <u>"도로표지시스템"이라 함은</u> 도로표지의 위치·내용 및 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p>	<p>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p> <p>3. <u>"자동차전용도로"란</u>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p> <p>4. <u>"공동구"란</u>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이하 "점용시설"이라 한다)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5. <u>"도로표지"란</u>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따라 경계·이정·방향·노선 및 그 밖의 표지를 말한다.</p> <p>6. <u>"도로표지시스템"이란</u> 도로표지의 위치·내용 및 제원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한</p>

현행	개정안
<p>위한 <u>일련의</u> 시설을 말한다.</p> <p>6. "<u>무인단속시스템</u>"이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u>도로상에</u>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7. "<u>지능형교통체계</u>"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p> <p>8. "<u>도로전광표지</u>"라 함은 도로상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p> <p>9. "<u>하천복개구조물</u>"이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육천 포함)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p>	<p><u>모든</u> 시설을 말한다.</p> <p>7. "<u>무인단속시스템</u>"이란 버스전용차로 등에 무인카메라, 검지시설(<u>도로 상에</u> 매설), 제어기, 통신 및 전기선로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센터에서 위반차량 등을 자동으로 식별·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8. "<u>지능형교통체계</u>"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처리·보관·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p> <p>9. "<u>도로전광표지</u>"란 시설물에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으로 문자·숫자 및 도형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p> <p>10. "<u>하천복개구조물</u>"이란 「하천법」에 의한 하천(‘<u>육천</u>’ 포함)을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p>

현행	개정안
<p>장 등의 <u>타 용도로</u> 사용하는 <u>일체의</u>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p>	<p>등의 <u>다른 용도로</u> 사용하는 <u>모든</u> 구조물(기초, 기둥, 상판, 벽체 등)을 말한다.</p>
<p>10. "<u>하천시설물</u>"이라 함은 하천 관리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u>제방·호안·보·수제·수문·관측시설·육갑문</u> 및 <u>빗물펌프장</u>(유수지포함) 등의 시설물과 그에 따른 <u>부대시설물</u>을 말한다.</p>	<p>11. "<u>하천시설</u>"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u>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u> <u>제방·호안·보·수제·수문·관측시설·갑문</u> 및 <u>빗물펌프장</u>(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u>부대시설</u>을 말한다.</p>
<p>11. "<u>하수도시설물</u>"이라 함은 <u>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u>를 말한다.</p>	<p>12. "<u>하수도</u>"란 <u>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시설의 총체</u>를 말한다.</p>
<p>12. "<u>도로부속물</u>"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p>	<p>13. "<u>도로부속물</u>"이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p>
<p>13. "<u>교통안전시설</u>"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u>신호기 및 안전표지</u>를 말한다.</p>	<p>14. "<u>교통안전시설</u>"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서 <u>규정한</u> <u>신호기 및 안전표지</u>를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14. "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p> <p>15. "2종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p> <p>16. "1종·2종이외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p>	<p>15. "1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p> <p>16. "2종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p> <p>17. "1종·2종이외시설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p>
<p>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u>도시안전실장</u>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p>	<p>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u>도시안전실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u>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p>
<p>1. 도시안전실장 : <u>서울특별시도·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 시설물, 도로부속물, 하천 및 하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u></p>	<p>1. 도시안전실장 : <u>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그 밖의 도로부속물</u></p>
<p>2. 도시교통본부장 : <u>교통안전·관리 시설물 등</u></p>	<p>2. 도시교통본부장 : <u>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버스전용차로·자전거도로 및 그 밖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3. 기후환경본부장: <u>도로(차</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u>소관</u>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해당 <u>시설물 및 도로부속물</u>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p> <p>② 관리자는 <u>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구조 또는 용도 등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p>	<p style="text-align: center;"><u>도·보도)의 청소</u></p> <p>4. <u>푸른도시국장: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제외)</u></p> <p>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u>별표에 따라</u>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u>따라야 한다.</u></p> <p>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해당 <u>시설물의 유지·관리</u>사무를 별표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p> <p>② 관리자는 <u>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u>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u>의한</u> 수탁자는 <u>당해</u>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p> <p>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u>하천시설물</u>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u>이에 따라 매년</u>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관리자는 제1항 및 <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계획을 <u>수립한 경우에는 이를</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p>	<p>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수탁자는 <u>해당</u>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u>제2항에서 정한</u>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p> <p>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 및 <u>하천시설</u>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u>매년</u>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관리자는 제1항 및 <u>제2항에 따라</u> 계획을 <u>수립하면</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u>제2항에 따른</u> 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따</u></p>

현행	개정안
<p><u>이에 따라야</u> 한다.</p> <p>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u>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u>,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u>관리자가</u>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생략)</p> <p>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u>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u>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u>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④ 관리자는 <u>제3항의 규정에 의한</u>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의 계획수립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u>라야</u> 한다.</p> <p>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u>제5조제2항에 따르며</u>, 별도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별로 <u>관리자를</u>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u>시설물은 바로</u>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u>제2항에 따른</u>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④ 관리자는 <u>제3항에 따른</u>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6조의 계획수립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8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① (생략)</p> <p>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u>이에 응하여야</u> 한다.</p>	<p>제8조(인력·장비 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u>따라야</u> 한다.</p>
<p>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u>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u> 한다.</p> <p>1. <u>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u>서 <u>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5년에 1회이상 실시</u></p> <p>2. <u>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시</u></p> <p>② <u>제1항의 정밀안전진단 기관 및 대가 등에 관하여는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① 관리자는 <u>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영별표1의2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u>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② <u>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0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u>기타</u>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도로 및 도로시설물</p> <p>제11조(도로공사의 시행)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3. (생략)</p> <p>4. <u>기타</u> 교통관리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자는 <u>도로 및 도로시설물에</u> 대하여 <u>다음 각호와 같이</u>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0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시설물의 자체 결함 또는 <u>그 밖의</u>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p> <p>제11조(도로상의 공사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u>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p> <p>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u>도로시설물에</u> 대하여 <u>영별표1의2에 따라</u>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p>	<p><삭 제></p>
<p>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육안,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p>	<p><삭 제></p>
<p>3.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 점검</p> <p>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p> <p>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p> <p>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p> <p>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p>	<p><삭 제></p>
<p><신 설></p>	<p>② 관리자는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1종·2종 이외시설물인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한다.</p>
<p>제13조(시설물 상태의 구분)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u>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u></p>	<p>제13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u>영 별표3의2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구</u></p>

현 행	개 정 안
<p>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1. A급 : 안전 및 기능유지가 정상적인 최상의 상태</p> <p>2. B급 : 경미한 손상은 있으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p> <p>3. 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p> <p>4. D급 : 주요부재가 노후화(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되어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p> <p>5. E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의 사용을 즉시 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p> <p>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p>	<p>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14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영 별표3의2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물</p>

현행	개정안
<p>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u>도로 및 도로시설물</u>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u>제7조의 규정에 의한</u>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u>도로시설물</u>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u>제7조에 따라</u>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u>도로 및 도로시설물</u>별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에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여 <u>제6조의 규정에 의한</u>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u>도로 및 도로시설물</u>에 대하여 안전조치 등이 <u>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당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u>지체없이 관계법령의 규정에</u> 따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5조(보수·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u>도로 시설물별로 영 별표3의2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u> 따라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고 <u>제6조에 따른</u>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u>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u>의 안전조치 등이 <u>긴급하게 필요할 경우</u> 해당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u>바로 관계법령에</u> 따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6조(<u>가로등 및 기전시설물</u>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u>가로등 및 기전시설물</u>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p>	<p>제16조(<u>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 시설물</u>의 유지·관리) ① 관리자는 <u>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u></p>

현행	개정안
<p>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u>도로 및 터널 등의 조명등이</u>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광원의 <u>교환·배선·기기보수</u>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의 <u>정비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u></p> <p>③ 관리자는 <u>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u> 유지·관리를 위하여 <u>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관한</u> 자료와 유지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u>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u>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광원의 <u>교체·배선·기기보수</u>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u>정비하여야 한다.</u></p> <p>③ 관리자는 <u>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u>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공동구</p> <p>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u>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이 장에서는 "점용시설등"이라 한다)</u>은 각 공동구 <u>점용시설물별 점용자(이하 이 장에서는 "점용자"라 한다)</u>가 책임·관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공동구</p> <p>제17조(공동구의 관리)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u>점용시설은 공동구의 각 점용시설별 점용자(이하 "점용자"라 한다)</u>가 책임·관리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점용자는 소관 <u>점용시설등의</u>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u>이를 관리자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8조(<u>공동구관리협의회</u> 구성·운영) ① 시장은 공동구의 <u>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u>의 심의를 위하여 <u>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에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16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도시안전실장이</u> 되며 위원은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2. (생략)</p> <p>3. 공동구 <u>점용기관의 소속 임직원</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점용자는 소관 <u>점용시설</u> 관리를 전담할 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u>관리자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u>공동구협의회</u> 구성·운영) ① 시장은 공동구의 <u>설치·관리</u>에 관한 <u>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u> 시장 소속으로 <u>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행정2부시장이</u> 되며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공동구 <u>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u></p>

현행	개정안
<p>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 업무에 관한 <u>식견과</u> 경험이 <u>풍부한 자</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③ 협의회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u>심의한다</u>.</p> <p>1.~ 5. (<u>생략</u>)</p> <p>④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u>협의회 위원장이 임명</u> 또는 위촉한다.</p> <p>1.~ 3. (<u>생략</u>)</p> <p>⑤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에 서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심의한다.</p> <p>1. (<u>생략</u>) 2. <u>기타</u>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등</p> <p>⑥ <u>제2항 및 제4항의</u> 규정에 의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p>	<p>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 업무에 관한 <u>학식과</u> 경험이 <u>있는 사람</u></p> <p>5. <u>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u></p> <p>③ 협의회는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39조의2제1항 <u>각 호의</u> 사항을 <u>심 의하거나 자문한다</u>.</p> <p>〈<u>삭 제</u>〉</p> <p>④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는 공동구별로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은 <u>공동구관리자가 임명</u> 또는 위촉한다.</p> <p>1.~ 3. (<u>현행과 같음</u>)</p> <p>⑤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에 서는 다음 <u>각 호의</u> 사항을 심의한다.</p> <p>1. (<u>현행과 같음</u>) 2. <u>그 밖에</u>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실무사항 등</p> <p>⑥ <u>제2항제4호에</u> 해당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p>

현행	개정안
<p>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⑦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u>범위내에서</u>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 관리자는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u>기타 관련도면</u>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u>도면</u>"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고, 변동이 있는 <u>때에는 지체없이</u>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p>② <u>도면은 공동구안에</u>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및 교점부 상세도면, <u>기타</u>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p>③ <u>도면에는</u>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관리자는 제2항의 <u>도면외에</u> 공동구의 주요지점에 대하여는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p>	<p>연임할 수 있다.</p> <p>⑦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u>범위에서</u>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유지관리도면의 작성) ① 관리자는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u>그 밖의 관리도면</u>을 기초로 현장을 실측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이하 "<u>공동구도면</u>"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고 변동이 있는 <u>경우에는 바로</u> 수정·보완하여야 한다.</p> <p>② <u>공동구도면은 공동구 안에</u> 설치된 각종 시설 평면도, 공동구 종단도, 교점부 상세도면, <u>그 밖의</u> 시설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p>③ <u>공동구도면은</u>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관리자는 제2항의 <u>공동구도면 외에</u> 공동구의 주요지점에 대해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p>

현행	개정안
<p>하여야 한다.</p> <p>⑤ 관리자는 <u>도면</u>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총괄관리자·소방재난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u>도면</u>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u>본체·부대시설 및 점용시설</u>에 대하여 <u>다음 각호와 같이 점검</u>을 실시하여야 한다.</p> <p><u>1.~ 4. (생략)</u></p> <p>②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1항에 의한 <u>점검</u>을 하는 때에는 누전·화재·누수 및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u>확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u> 시정조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점용자는 소관 <u>점용시설</u>등을 <u>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u>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작성하여야 한다.</p> <p>⑤ 관리자는 <u>공동구도면</u>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소방재난본부장 및 점용자에게 <u>공동구도면</u>을 배포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방재활동에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u>본체 및 부대시설과 점용시설</u>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u>안전점검</u>을 실시하여야 한다.</p> <p><u><삭제></u></p> <p>②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u>안전점검</u>을 할 경우에는 누전·화재·누수,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u>확인한 결과 이상을 발견하면 바로</u> 시정조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점용자는 소관 <u>점용시설</u>을 <u>점검하려면 미리</u>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1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소관 점용시설등에 대한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점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하여 <u>필요할 경우 점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관 점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② <u>점용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관리자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2조(공사의 승인) ① 점용자는 <u>점용시설등의 공사 또는 보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 <u>점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인하여 공동구의 본체·부대시설 또는 다른 점용시설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공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점용시설의 점용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u></p>	<p>제22조(점용시설공사의 사전 승인) ① 점용자는 <u>점용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이하 "점용시설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 <u>점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시설공사가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이나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그 내용을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미리 점용시설공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공사가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점용자와 사</u></p>

현행	개정안
<p>제23조(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u>공사를</u>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u>공사를</u> 시행하는 경우 <u>점용시설등에 장애</u>가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점용자가 <u>공사를 완료한 때</u>는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제23조(점용시설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의 내부에서 <u>점용시설공사</u>를 시행하는 자는 관리자가 정한 공사시행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가 공동구의 본체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u>점용시설공사</u>를 시행하는 경우 <u>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u>가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점용자가 <u>점용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u> 관리자에게 공사완료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4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화재 또는 누수 등에 의하여 <u>점용시설등에 장애</u>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u>때</u>는 관리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u>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점용자가 <u>제1항의 규정에</u> 의</p>	<p>제24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화재 또는 누수 등에 의하여 <u>점용시설의 운용에 장애</u>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u>경우</u> 관리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제22조 제1항에 따른</u>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점용자가 <u>제1항에 따른</u> 긴급</p>

현행	개정안
<p>한 긴급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u>지체없이</u> 관리자에게 긴급조치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5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또는 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u>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점용자가</u> 책임을 진다.</p>	<p>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u>바로</u> 관리자에게 긴급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5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의 설치·관리 또는 점용시설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u>경우 해당 점용시설의 점용자가</u> 책임을 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u>교통안전·관리시설물</u></p> <p>제26조의2(교통안전시설의 관리)</p> <p>①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는 <u>때에는</u>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u>안전성의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u>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u>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u></p> <p>제26조의2(교통안전시설의 관리)</p> <p>①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는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는 <u>경우에는</u>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u>안전성을 확보하거나</u>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7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매년 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u>유지관리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u>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도로표지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u> 관리자가 수립한 <u>유지관리계획에</u>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u>유지관리계획에는</u> 다음 <u>각호의 사항이</u> 포함되어야 한다.</p> <p>1.~ 4. (생략)</p> <p>5. <u>기타</u>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제27조(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자는 매년 도로표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u>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u>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도로표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u> 관리자가 수립한 <u>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u>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u>도로표지유지관리계획에는</u> 다음 <u>각 호의 사항이</u> 포함되어야 한다.</p> <p>1.~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도로표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제28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u>관리자가 이를</u>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제28조(도로표지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u>관리자가 공동으로</u>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u>때에는</u>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관리자는 도로표지의 신설 및 변경이 있는 <u>경우에는</u>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표지시스템 자료를 수정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p>
<p>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생략)</p> <p>② 관리자는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정기점검을 다음 <u>각호의</u>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u>제2조부터</u>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p>	<p>제29조(도로표지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리자는 <u>제1항에 따라</u> 정기점검을 다음 <u>각 호의</u>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점검사항 : 정기점검은 「도로표지규칙」 <u>제3조부터</u>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점검한다.</p>
<p>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생략)</p> <p>1.~ 2. (생략)</p> <p>3. <u>기타</u>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관리</p>	<p>제30조(무인단속시스템의 관리업무)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무인카메라 설치지점의 도로환경 등 상황관리</p>
<p>제31조(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업무)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u>각호와</u> 같다.</p>	<p>제31조(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업무) ①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u>각 호와</u> 같다.</p>

현행	개정안
<p>1. <u>교통관리센터(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남산권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가공 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u></p> <p>2. (생략)</p> <p>3. <u>기타</u>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p>	<p>1. <u>교통관리센터(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남산권 교통관리센터), 현장에 설치된 교통정보의 수집·가공·제공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u></p> <p>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등)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u>지체 없이</u> 보수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 점검 등)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u>바로</u> 보수 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33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관리자는 <u>지능형교통체계 설치도로에</u>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33조(무인단속시스템의 시설개선) 관리자는 <u>지능형교통체계를 설치한 도로에</u> 대하여 환경변화 분석과 운영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34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p>	<p>제34조(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p>

현행	개정안
<p>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점용 허가권자(<u>신고에 대한 수리권자</u>를 포함한다)는 허가전에 <u>당해</u>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지점의 도로굴착·점용 허가권자(<u>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자</u>를 포함한다)는 허가전에 <u>해당</u>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하천복개구조물</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하천복개구조물</p>
<p>제35조(<u>점용자 지정 등</u>) ① <u>하천복개구조물(이하 "복개구조물"이라 한다)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장에서 "점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u></p>	<p>제35조(<u>설치사용자 지정 등</u>) ① <u>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 등 시설물(이하 "설치시설물"이라 한다)은 해당 설치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사용자(이하 "설치사용자"라 한다)가 관리한다.</u></p>
<p>② <u>각 시설물의 점용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u>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주차장, 적환장 포함)인 경우에는 도시안전실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이 점용자가 된다.(단, 도로기능과 관</u></p>	<p>② <u>각 설치시설물의 설치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이 설치사용자가 된다.(단, 도로기능과 관계없이 별도로 견인소·주차장·철도·</u></p>

현행	개정안
<p>계없이 별도로 견인소·주차장·철도·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u>점용자가 된다</u>).</p> <p>2. <u>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은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은 자치구청장이 점용자가 된다.</u></p> <p>3. <u>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점용자가 된다.</u></p> <p>③ 시장은 <u>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책임</u>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u>시설물별로 점용자를 지정</u>하여야 한다.</p> <p>제36조(안전점검 등) ① <u>점용자는 복개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복개구조물의 본체를 2종시설물에 준하여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u>하여야 한다.</p>	<p>상가 등을 목적으로 복개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u>설치사용자</u>가 된다)</p> <p>2. <u>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건축물이면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설치기관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의 장,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자치구청장이 설치사용자</u>가 된다.</p> <p>3. <u>하천복개구조물의 주용도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설치사용자</u>가 된다.</p> <p>③ 시장은 <u>하천복개구조물에 설치된 설치시설물의 관리책임</u>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u>설치시설물별로 설치사용자를 지정</u>하여야 한다.</p> <p>제36조(안전점검 등) ① <u>설치사용자는 하천복개구조물을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u>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u>점용자는</u>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u>복개구조물 본체의</u>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경우에는</u>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u><단서신설></u></p> <p>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 <u>점용자는</u> <u>소관시설물에</u>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u>복개구조물과 시설물의</u>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u>점용자는</u> 순찰을 실시한 결과 <u>복개구조물의</u>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u>때에는</u> <u>지체없이 시설물의</u> 사용제한·유지보수공사실시·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u>이를 통보하여야</u> 한다.</p> <p>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u>점용자에게 소관 시설물의</u>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 또는 보수</p>	<p>② <u>설치사용자는</u>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u>하천복개구조물의</u>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u>인정하면</u>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u>단,</u> <u>도로 기능의 하천복개구조물 설치사용자는</u>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 <u>설치사용자는</u> <u>소관 설치시설물에</u>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u>하천복개구조물과 설치시설물의</u>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u>설치사용자는</u> 순찰을 실시한 결과 <u>하천복개구조물의</u>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바로 설치시설물의</u> 사용제한·유지보수공사실시·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p> <p>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u>설치사용자에게 해당 설치 시설물의</u>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p>

현행	개정안
<p>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u>점용자는</u>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이에 따라야</u> 한다.</p>	<p>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u>설치사용자는</u>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따라야</u> 한다.</p>
<p>제38조(하천복개공사 시행) 관리자가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u>때는 이를</u>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법」 <u>제87조의 규정에 의한</u>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제38조(하천복개공사 시행) 관리자가 하천을 복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u>경우에는 그 내용을</u>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법」 <u>제87조에 따른</u> 서울특별시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제39조(서류비치) ① <u>점용자는</u> 순찰·안전점검·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u>때에는 다음 각호의</u> 서류를 <u>비치하여야</u> 한다.</p>	<p>제39조(서류의 준비) ① <u>설치사용자는</u> 순찰·안전점검·유지보수 또는 개량을 실시한 <u>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u> 서류를 <u>갖추어야</u> 한다.</p>
<p>1.~ 2. (생략) 3. <u>시설물관리카드</u> 4. <u>기타</u>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p>	<p>1.~ 2. (현행과 같음) 3. <u>설치시설물관리카드</u> 4. <u>그 밖의</u>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p>
<p>② <u>점용자는 제1항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를</u>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u>설치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설치시설물관리카드를</u>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6장 <u>하천 및 하천시설물</u></p>	<p>제6장 <u>하천(하천구역 및</u></p>

현행	개정안
<p>제40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 및 하천시설물(이하 이 장에서 "하천시설물" 이라 한다)의 점검·정비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1종시설물·2종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은 특별법·령에 의한 점검·진단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u>하천시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4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u>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육안,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 3. 긴급점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시 점검 	<p>제41조(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자는 <u>하천시설에 대하여 영 별표1의2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가. <u>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u>	<삭 제>
나. <u>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u>	<삭 제>
다. <u>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u>	<삭 제>
라. <u>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u>	<삭 제>
② 관리자는 <u>수문, 육갑문, 빗물 펌프장(유수지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	<삭 제>
1. <u>일상점검 : 일일 또는 필요시 수시</u>	<삭 제>
2. <u>정기점검 : 관리자가 정하는 점검포에의한 주간, 월간, 분기 및 연간점검</u>	<삭 제>
3. <u>긴급점검 : 시설물의 긴급상황 발생시</u>	<삭 제>
제42조(보수조치) ① 관리자는 <u>하천시설물에</u>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성의 확보 및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42조(보수조치) ① 관리자는 <u>하천시설에</u> 대한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성의 확보 및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하천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u>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u>	② 관리자는 <u>제41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u>

현행	개정안
<p>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하천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보수 및 보강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이에 따라야 한다.</p>	<p>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p> <p>③ 시장은 하천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소관 시설물의 철거·보수 및 보강공사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u>없을 경우</u> 따라야 한다.</p>
<p>제43조(서류비치)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u>비치하여야</u> 한다.</p> <p>1.~ 4. (생략) 5. <u>기타</u>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p> <p>② 관리자는 제43조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u>하수도시설물</u></p>	<p>제43조(서류의 준비) ① 관리자는 하천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갖추어야</u> 한다.</p> <p>1.~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의</u> 보고서류 및 증빙서류</p> <p>② 관리자는 제1항제3호의 시설물관리카드 및 도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u>하수도</u></p>
<p>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p>	<p>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p>

현행	개정안
<p>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u>하수관거유지관리지침(환경부)</u>을 준용한다.</p> <p>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u>하수도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정기점검 : <u>연1회 이상</u>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u><단서시설></u> 3. 정밀점검 : <u>2년에 1회 이상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u> 	<p>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u>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u>을 준용한다.</p> <p>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u>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정기점검 : <u>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은 6개월에 1회 이상, 하수관거 등 그 밖의 시설은 연1회 이상</u>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 <u>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정밀점검 실시시기는 영별표1의2를 적용하고,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u>

현행	개정안
<p>4. (생략)</p> <p>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u>복개구조물 및 차집관거</u>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u>조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u>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6조(<u>기타</u> 도로부속물 관리) <u>이 조례에서</u> 규정하지 <u>아니한 기타</u> 도로부속물은 별표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u>이를 책임</u> 관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u>으로 실시</u></p> <p>4. (현행과 같음)</p> <p>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u>하천복개 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u>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u>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u>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6조(<u>그 밖의</u> 도로부속물 관리) <u>이 조례에</u> 규정하지 <u>않은 그 밖의</u> 도로부속물은 별표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준하여 관리자 및 자치구청장이 <u>책임</u> 관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현행	개정안
<p>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u>때에는</u>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u>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u>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u>이</u>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 <u>제1항의 신고자에</u>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u>경우에는</u>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u>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u>는 예산의 <u>범위에서</u>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u>이</u>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 <u>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u>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 로 시 설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시설물 	도시안전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관리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2종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관리(측구포함)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도로시설물 포함) 및 보도 청소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관리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 청소 및 녹지·가로수 차도관리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2종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 로 부 속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의 조명 및 기전시설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상의 일반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2종 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 서울특별시도상의 가로등(보도육교 포함) 서울특별시도상의 지하보도 조명 및 기전시설물 	도로교통사업소장
도 로 부 속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차량진입금지시설·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보·차도부분)상과 관련되는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과 관련되는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 차도상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옹벽·중앙분리대 포함) 서울특별시도상 및 자동차전용도로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 	도로교통사업소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 로 · 보 도 · 및 도 로 시 설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포함) 차도 및 보도 청소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녹지 및 가로수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도 로 부 속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구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보도·보도육교 	자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도 로 부 속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 	도시안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전용도로(보도 및 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사업소장

현행			개정안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충격흡수 시설 · 낙석 방지망 · 절개지 · 법면 · 도로옹벽 · 방음벽 · 맨홀 등)	차도 중 2종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과 관련되는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지·도로 · 옹벽 · 방음벽 · 맨홀 등)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 차도이외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 차도상 맨홀 관리	자치구청장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기타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사업소장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설비와 긴급 연락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시교통본부장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 버스전용차로 유·무인 단속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도시교통본부장	교통관리 시설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본부장
		○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 문안검토	도시교통본부장	
		○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삭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도시안전실장	
		○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중 2종시설물 및 1종·2종이외시설물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안전 시설 (신호기, 안전표지)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교통안전 시설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신설>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도시안전실장	
		○ 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서울특별시도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 신호기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관할 도로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도로교통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현행			개정안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통안전 부속물 (시선 유도표지, 시선유도 봉, 갈매기 표지, 도로반사 경 등)	○구 관할 도로상의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자치 구청장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 본부장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 본부장
	○자동차전용도로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신설>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시안전 실장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중 1종 시설물의 교통안전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 서울특별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도로 사업소장
○서울특별시도상의 교통안전부속물(중앙 및 환승 정류소 보도관리 포함)의 설치 및 관리(1종 시설물 구간 제외)	도로교통 사업소장	○ 서울특별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중앙 및 환승 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하천 시설물	○국가, 지방1·2급 하천 (단,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이 유지관리)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자치구청장	하천 시설물	○감문,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한강사업 본부장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호안블럭,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등	자치구청장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빗물펌프장(우수지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 호안블럭,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 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자치 구청장
	○구조물, 문짝, 권양기 시설물 등	자치구청장		○ 국가 및 지방 하천 (한강 제외) ○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한강의 육갑문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한강사업 본부장		○ 감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 감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기타하천 육갑문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자치구청장				
하수도 시설물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 소장 (위탁업체 대표)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 소장 (위탁업체 대표)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 소장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 소장

현행			개정안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위탁업체 대표)			(위탁업체 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시설물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유지관리 - 2종이하 시설물은 도로교통사업소장이 유지관리(단, 1종 시설물 포장 관리 포함) 	주기능별 접용기관(부서)의장	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기능별 설치 사용자
<p>- 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관리국장</p> <p>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와 가로수 녹지대 : 도시교통본부</p> <p>참고 : 차도가 있는 도로에서의 차도는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면을 말함</p>			<p>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도시안전실장</p> <p>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도시안전실장</p> <p>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p> <p>라.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구간 중(도로부속물·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의 민원·분쟁·소송관련 업무수행 : 도로사업소장</p> <p>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p> <p>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p>		